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단1188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 2019. 9. 25.

판결 선고 2019. 10.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2. 4.부터 2019. 3. 30.까지는 연 9%의, 2019. 3.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2018. 1.경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8.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E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회사는 E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4. E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19. 1. 5.부터 2019. 2. 3.까지 3억원에 대하여 연 6%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결과 그 지연손해금은 1,479,452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인 2019. 3. 3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이후 피고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보증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 규정상 어쩔 수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한경환

청 구 원 인

1. 본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주) C {이하 피고회사라 함}는 소외 E (주){이하 피보험자라 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아래 보험계약내용과 같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 증 보 험 계 약 내 용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비고
F	(주) C	E (주)	금300,000,000원	2018. 01. 31.- 2019. 01. 30.	

2. 위 보험계약체결시 위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 15%를 적용함}

3. 피고 D 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4.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는 피보험자와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 4. 보험금 300,000,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음.

5.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동 지급보험금 300,000,000원 및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2019. 2. 3.까지의 지연손해금 1,479,452원의 합계금 301,479,452원과 위 지급보험금에

대한 2019.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들과 약정한 합의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소를 제기함.

